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(어기구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8164 발의연월일: 2021. 2. 17.

발 의 자: 어기구 • 박상혁 • 허종식

박 정・김정호・윤재갑

소병훈 · 최인호 · 홍영표

이원택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국토의 63%를 차지하는 산림의 체계적인 관리 및 현실을 반영한 효과적인 산림정책의 수립을 위해서는 산림과 임업에 대한 통계조사 및 조사 결과를 활용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필요하지만 현재 산림·임업분야 통계조사는 일부 조사항목에 한정하여 「탄소흡수원법」,「산림자원법」,「임업진흥법」등 개별 법률에 단편적인 근거만을 두고 추진 중인 실정임.

이에 산림정책의 기본법인 「산림기본법」에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통계조사 근거를 마련하고, 통계조사 및 수행을 위한 전담기관 지정· 운영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여 산림정책 전반에 대한 현황 파악 산 림기본계획의 목표 달성 측정을 통해 산림정책의 실행력을 제고하고 자 함(안 제12조의2 및 제12조의3 신설).

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산림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장에 제12조의2 및 제12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12조의2(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·관리 등) ① 산림청장은 산림기본 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·시행하고 임업의 진흥에 활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산림 및 임업의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(이하 "실태조사"라 한다)를 하고, 산림 및 임업에 관한 통계(이하 "통계"라 한다)를 작성·관리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통계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「통계법」을 준용한다.
 - ② 산림청장은 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, 지방자치단체의 장,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, 관련 기업·단체에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.
 - ③ 산림청장은 실태조사의 결과 및 통계를 전산화하여 산림데이터 베이스를 구축・유지 및 관리하여야 한다.
 - ④ 산림청장은 실태조사, 통계의 작성·관리 및 산림데이터베이스의 구축·운영 등을 제12조의3에 따른 전담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

- ⑤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, 범위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12조의3(전담기관의 지정 및 지원) ① 산림청장은 실태조사, 통계의 작성·관리 및 산림데이터베이스의 구축·운영 등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.
 - ② 산림청장은 전담기관이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 - ③ 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,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| 전 설> 제12조의2(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・관리 등) ① 산립청장은 산립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・시행하고 임업의 진흥에 활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산립 및 임업의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(이하 "실태조사"라 한다)를 하고, 산립 및 임업에 관한 통계(이하 "통계"라 한다)를 작성・관리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통계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하여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「통계법」을 준용한다. ② 산립청장은 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, 지방자치단체의 장,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, 관련 기업・ | 성·관리 등) ① 산림청장은 산림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 집·시행하고 임업의 진흥에 |
|---|--|
| 단체에 자료의 제공을 요정할 수 있다. 이 경우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| 및 임업의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(이하 "실태조사"라 한다)를 하고, 산림 및 임업에 관한 통계(이하 "통계"라 한다)를 작성한 관리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통계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하여 기업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「통계법」을 준용한다. 2) 산림청장은 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, 지방자 지단체의 장,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 |

<신 설>

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.

- ③ 산림청장은 실태조사의 결과 및 통계를 전산화하여 산림 데이터베이스를 구축·유지 및 관리하여야 한다.
- ④ 산림청장은 실태조사, 통계의 작성·관리 및 산림데이터 베이스의 구축·운영 등을 제1 2조의3에 따른 전담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
- ⑤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, 범위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12조의3(전담기관의 지정 및 지원) ① 산림청장은 실태조사, 통계의 작성·관리 및 산림데 이터베이스의 구축·운영 등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.
 ② 산림청장은 전담기관이 제1한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 - ③ 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,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

대통령령으로 정한다.